



[www.jp.go.kr](http://www.jp.go.kr)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828호 2025년 1월 10일(금)

**예 규**

- 증평군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준 일부개정예규 ----- 2

**공 고**

- 제20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출안건 공고 ----- 4
-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
-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공표 ----- 10
-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대상 주민총수 공표 ----- 12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 ----- 14

회									
람									

**증평군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준**

일부개정예규를 발령한다.

2025년 1월 10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예규 제35호

**증평군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준 일부개정예규**

증평군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포인트의 지급기준)”을 “(포인트의 배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급한다”를 “배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000포인트”를 “1,030포인트”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족포인트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산 축하포인트. 다만, 배정 대상자가 증평군 소속 부부 공무원인 경우에는 부부 중 1명에게만 배정한다.

가. 첫째 자녀 출산 시 300포인트

나. 둘째 자녀 출산 시 400포인트

다.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 500포인트

- ④ 제1항제4호에 따른 출산포인트를 배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출산 축하포인트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공고 제2025-21호

## 제20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출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에 따라 제20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출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7일  
증 평 군 수

### □ 제출안건

1.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건내용은 증평군청 홈페이지(<https://www.jp.go.kr/>)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증평군청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043-835-3142)

**증평군 공고 제2025-27호**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증평군 자치법규 등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0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의 첨부서류 준비를 통해 분쟁조정신청을 간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정비(안 제5조)

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 첨부서류 정비(안 별지 제1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증평군수(도시건축과 주택팀,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홈페이지, 팩스, 직접 방문

다. 제출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20일간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청 도시건축과 주택팀  
(전화 : 835-3952, 팩스 : 835-39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 고
	찬 성	반 대		

증평군 규칙 제 호

##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주사가”를 “공무원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를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간사 등)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 <u>주사가</u> 된다.	제5조(간사 등) ----- ----- ----- ----- <u>공무원이</u> --.

증평군 공고 제2025-45호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공표

「주민투표법」 제9조 제4항 및 「증평군 주민투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증평군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5년 1월 10일  
증 평 군 수

(단위 : 명)

시군별	청구권자 총수(18세 이상)				서명인수	비 고
	계 (A=B+C-D)	내국인 (B)	등록 외국인 (C)	선거권 없는자 (D)		
증평군	31,775	31,807	138	170	3,178	

붙임 관련법령 1부. 끝.

붙임	관련법령
----	------

### □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투표권)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개정 2009. 2. 12., 2016. 5. 29., 2022. 4. 26.>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②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 2. 12.>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1. 주민이 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제5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18세 이상 주민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투표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주민투표청구권자”라 한다)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2. 12., 2022. 4. 26.>

1. 삭제 <2009. 2. 12.>
2. 삭제 <2009. 2. 12.>

③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2. 12., 2016. 5. 29.>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증평군 주민투표 조례

제3조(주민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한다.

증평군 공고 제2025-46호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대상 주민총수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증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증평군 2025년도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를 위한 청구권자 총수 및 연서대상 주민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5년 1월 10일  
증 평 군 수

(단위 : 명)

구분	청구권자 총수(18세 이상)				최소 연서 주민수	비고
	계 (A=B+C-D)	내국인(B)	등록 외국인(C)	선거권 없는자(D)		
증평군	31,734	31,807	97	170	1,587	

붙임 관련법령 1부. 끝.

<b>붙임</b>	<b>관련법령</b>
-----------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1.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도: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2.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3.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4.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5.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6. 인구 5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 ② 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 증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청구에 필요한 최소 연서수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명으로 계산한다.

-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증평군 공고 제2025-47호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증평군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5년 1월 10일  
증 평 군 수

(군 수)

(단위 : 명)

구 분	청구권자 총수(19세 이상)				서명인수	최 소 서명인수
	계 (A=B+C+D)	내국인(B)	등록 외국인(C)	선거권 없는자(D)		
계	31,603	31,533	97	27	4,741	
증 평 읍	30,010	29,942	93	25		317
도 안 면	1,593	1,591	4	2		317

(군의원)

(단위 : 명)

구 분	청구권자 총수(19세 이상)				서명인수	
	계 (A=B+C+D)	내국인(B)	등록 외국인(C)	선거권 없는자(D)		
군 의 원	가선거구	11,010	10,982	42	14	2,202
	나선거구	10,358	10,331	34	7	2,072
	다선거구	10,235	10,220	21	6	2,047

붙임 관련법령 1부. 끝.

붙임

관련법령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주민소환투표권)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다.

1.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2.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①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선출직 지방공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2.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이상
3.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이하 “지역구시·도의원”이라 한다) 및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 :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시·군·자치구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의 시·군·자치구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만분의 5이상 1천분의 10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시·군·자치구 전체의 수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역구시·도의원과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함에 있어서 당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당해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안의 읍·면·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의 읍·면·동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만분의 5 이상 1천분의 10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당해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안의 읍·면·동 전체의 수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은 주민소환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① 법 제7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관할구역 안의 시·군·자치구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 3분의 1 이상의 시·군·자치구에서 받아야 할 서명인 수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과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하여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의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 3분의 1 이상의 읍·면·동에서 받아야 할 서명인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도지사 : 해당 시·군·자치구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 2. 시장·군수·구청장 : 해당 읍·면·동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 3. 지방의회의원 :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서명인 수가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만분의 5미만인 경우에 서명을 받아야 할 서명인 수는 1만분의 5로 하고, 1만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 서명을 받아야 할 서명인 수는 1만분의 100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서명인 수를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와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 공보 또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掲載)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